

동작구의회공고 제2023-85호

「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」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3년 10월 6일  
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

### 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# 1. 제안이유

헌혈인구 감소로 걱정된 혈액보유량 유지가 힘든 상황에서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유도하고, 헌혈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방법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(안 제4조의2)
- 나. 헌혈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함(안 제10조)

#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 [주소 :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(노량진동47-2)]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(전화 : 820-1715, FAX : 820-1474, E-mail : kyh06800@dongjak.go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공공기관 우선 참여) 구청장은 관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1. 소속 공무원 헌혈 시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의6에서 정한 공가 활용 장려
2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근로자에 대한 헌혈 시 공가제도 도입 등 인센티브 방안 마련

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, 지원방법, 지원절차 등은 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」에 따른다.

제11조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&lt;신 설&gt;</p>	<p><u>제4조의2(공공기관 우선 참여) 구청장은 관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소속 공무원 헌혈 시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의6에서 정한 공가 활용 장려</u></li> <li>2. <u>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근로자에 대한 헌혈 시 공가제도 도입 등 인센티브 방안 마련</u></li> </ol>
<p>제10조(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) (생략)</p>	<p>제10조(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
<p>&lt;신 설&gt;</p>	<p>② <u>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, 지원방법, 지원절차 등은 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」에 따른다.</u></p>
<p>제11조(헌혈자에 대한 지원) ① (생략)</p> <p>② <u>구청장은 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 제23조제6</u></p>	<p>제11조(헌혈자에 대한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&lt;삭 제&gt;</p>

호에 따라 헌혈에 참가한 공무원에게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7

② (현행 제3항과 같음)

# 【 관 계 법 령 】

## ▶ 혈액관리법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국민의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0. 12. 29.][중전 제4조는 제4조의3으로 이동 <2020. 12. 29.>]

## ▶ 혈액관리법 시행령

제2조의3(헌혈의 권장)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혈액의 수급조절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 <개정 2005.1.29, 2008.2.29, 2010.3.15, 2021.6.15>

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제1항에 따른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,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혈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공공단체·민간단체 또는 혈액원에 대하여 헌혈권장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05.1.29, 2019.5.28>